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

- I. 평생교육사 안내 4
 - 1. 평생교육사 책무별 과업 4
 - 2. 평생교육사 종사분야 5
 - 3.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및 기준 5

- II.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6
 - 1.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변천사 6
 - 2.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7
 - 3.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8
 - 4.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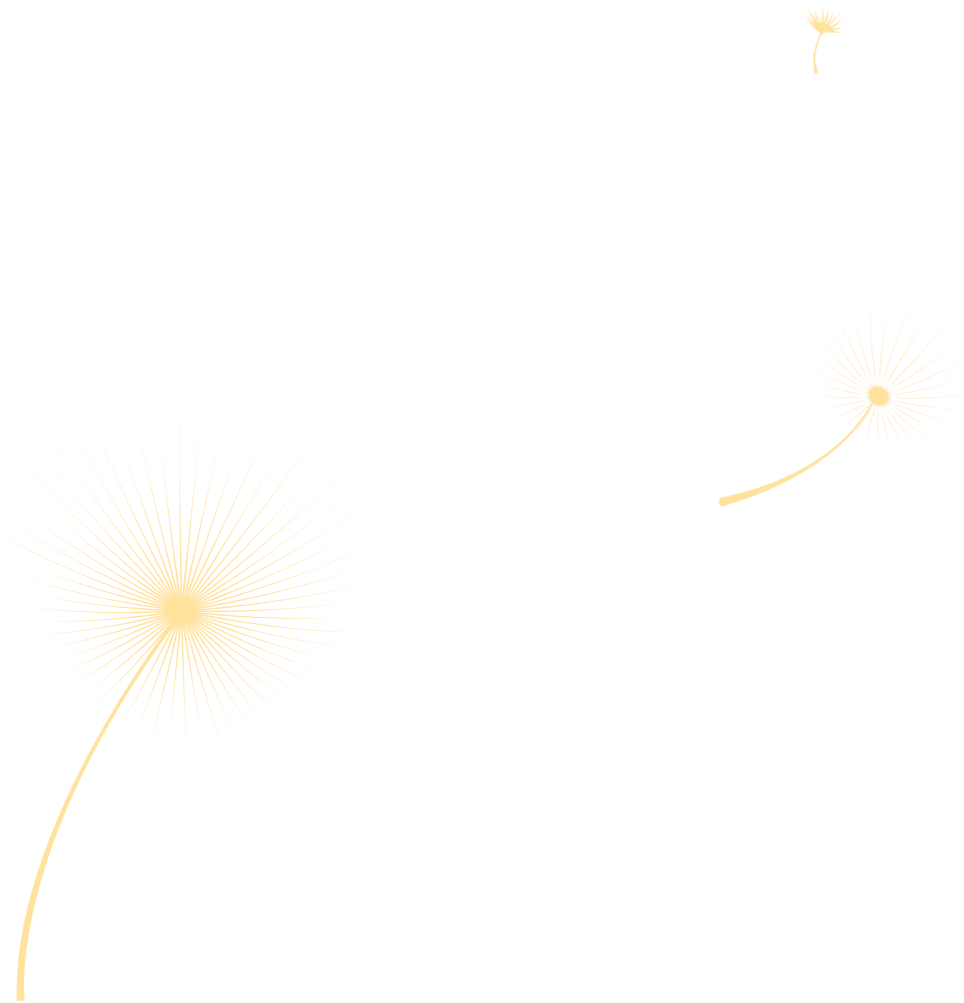
- III.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16
 -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16
 - 2. 평생교육사 재(전환)발급 신청 방법 18

- IV.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20
 - 1.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기준 20
 - 2.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이수요건 20
 - 3.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절차 21
 - 4. 평생교육사 실습담당교수·실습지도자 자격요건 및 주요역할 21
 - 5.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유형 및 예시 22

- V.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상담 23

- VI. 자주하는질문 24

- 부록 31



I. 평생교육사 안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1. 평생교육사 책무별 과업

<p>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특성 및 요구조사 분석 ▶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 평생학습 자원 조사 분석 ▶ 평생학습권역 매핑 ▶ 평생학습 SWOT 분석 ▶ 평생학습 프로그램 조사 분석 ▶ 평생학습 통계 데이터 분석 ▶ 평생학습자원 및 정보 DB 구축 	<p>기획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비전과 전략 수립 ▶ 평생학습 추진체제 설계 ▶ 평생학습 중·장기/연간계획 수립 ▶ 평생학습 단위사업계획 수립 ▶ 평생학습 축제 기획 ▶ 평생학습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 ▶ 평생학습 예산계획 및 편성 ▶ 평생학습 실행계획서 수립 	<p>네트워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네트워크체제 구축 ▶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실행 ▶ 사업 파트너십 형성 및 실행 ▶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및 촉진 ▶ 조직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촉진 ▶ 협의회 및 위원회 활동 촉진 ▶ 지원세력 확보 및 설득 ▶ 평생교육사 임파워먼트 실행
<p>프로그램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 분석 ▶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 프로그램 목적/목표 설정 및 진술 ▶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조직 ▶ 프로그램 매체 및 자료 개발 ▶ 프로그램 실행 계획 및 매뉴얼 제작 ▶ 프로그램 실행 자원 확보 ▶ 프로그램 특성화 및 브랜드화 ▶ 프로그램 분류 및 유의가 창출 ▶ 프로그램 지적, 문화적 자산화 	<p>운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 강사 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홍보 및 계획 ▶ 학습시설 매체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 학습결과 인증 및 관리 ▶ 평생학습 예산관리 및 집행 ▶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p>교수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학습동기화 촉진 ▶ 강의 원고 및 교안 작성 ▶ 단위 프로그램 강의 ▶ 평생교육사업 설명회 및 교육 ▶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 ▶ 평생교육사 실습지도 ▶ 평생교육 자료 및 매체 개발 ▶ 평생교육사 학습역량 개발
<p>변화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참여 촉진 ▶ 평생교육단체 육성 및 개발 ▶ 평생학습자 인적자원 역량개발 ▶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촉진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 평생학습 관계자 멘토링 ▶ 평생학습 실천지도자 양성 ▶ 평생학습 공동체 및 문화조성 	<p>상담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상황분석 ▶ 평생학습 ON/OFF라인 정보제공 ▶ 학습장애 및 수준 진단·처방 ▶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 평생학습 상담사례 정리 및 분석 ▶ 학습자 사후관리 및 추수지도 ▶ 생애주기별 커리어 설계 및 상담 ▶ 의뢰기관 평생학습 자문 및 컨설팅 	
<p>평가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성과지표 창출 ▶ 공모사업 기획서 평가 ▶ 목표대비 실적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생학습 영향력 평가 ▶ 평가발표자료 제작 및 발표 ▶ 평생학습 성과관리 및 DB 구축 ▶ 프로그램 프로파일 생성 ▶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 ▶ 지식창출 성과 정리 	<p>행정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정부 평생학습 공문 생성 ▶ 평생학습 공문 회람 및 협조 ▶ 평생학습기관 및 담당부서 업무보고 ▶ 광역/기초단체장 지참과 관심 반영 ▶ 평생학습 감사자료 생성과 보관 ▶ 평생학습관 모니터링 및 감사 ▶ 평생학습기관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 평생학습관련 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평생교육사 배치활성화 방안 연구.

2. 평생교육사 종사분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활동영역

평생학습 전담기구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평생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자치단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센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원격대학형태	도서관/박물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부설	직업훈련시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교육지원청	유·초·중·고·대학부설	연수원
		사내대학형태	청소년수련시설
		언론기관 부설	미술관/과학관
		학교형태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3.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및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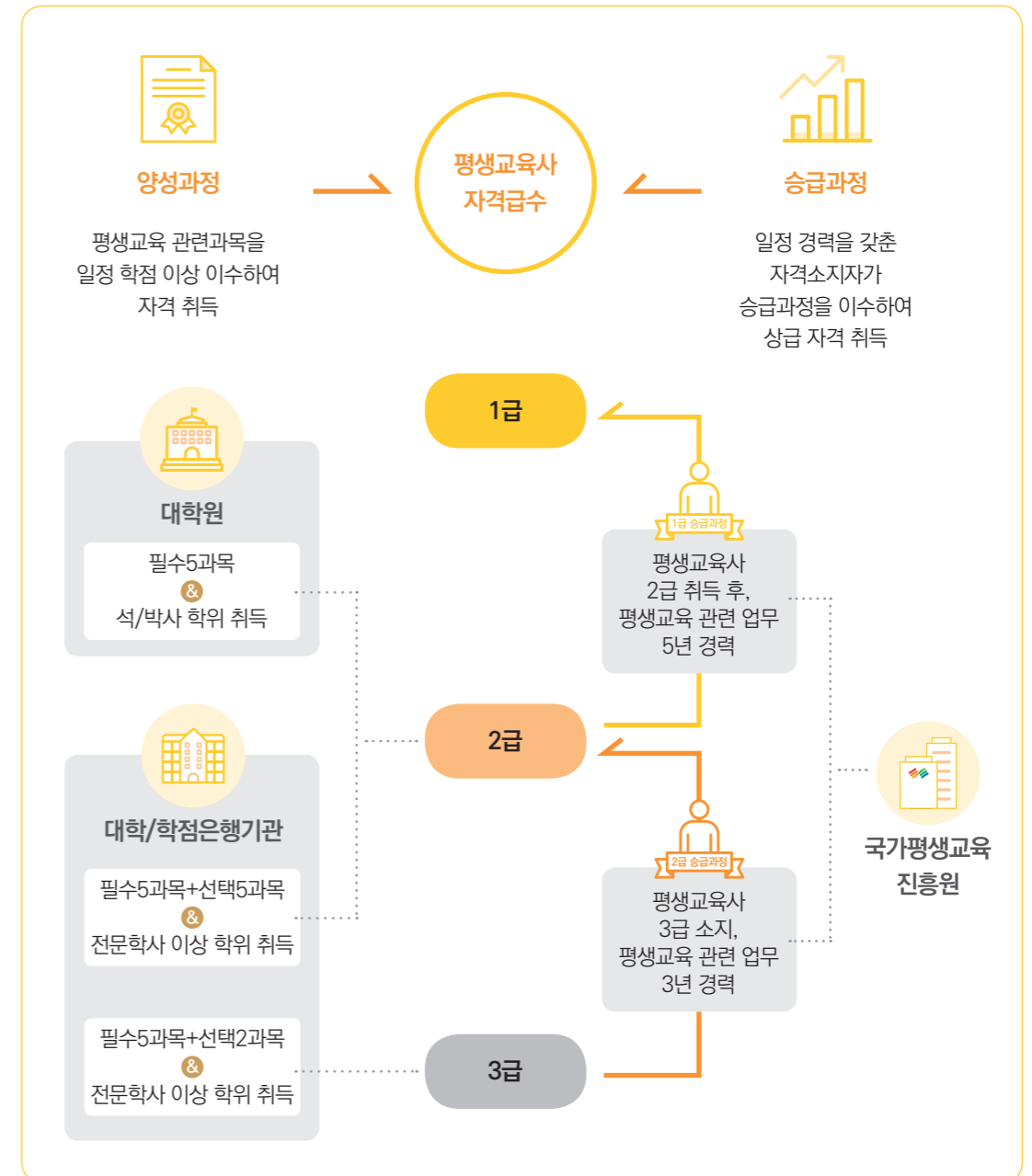
배치대상	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 2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II.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1.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변천사



2.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3.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 적용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이 다릅니다.
- (구)평생교육법의 경우 2008년도(포함)까지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학 당시 관련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개정)평생교육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1급		
 대학원	2007년까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하여 평생교육 관련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평생교육 관련전공 :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분야 (예시)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전공	
2급		
 대학원	1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원 재학생 필수7과목(총14학점) ※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대학	2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20학점) & 학사학위취득	3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20학점)
 전문대학	4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30학점) & 전문학사학위취득	5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30학점)
3급		
 전문대학	1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20학점) & 전문학사학위취득	2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20학점)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입학연도 및 이수한 과목에 따라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을 일부라도 이수하였다면 (구)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수과목	과목2* (~2002년 2월 이전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산업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노인심리학, 노인학, 농촌사회학, 도서관학, 도시사회학, 레크리에이션지도(또는 레크레이션지도), 박물관학,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법규(론),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통계(학), 사회교육학, 사회교육행정론, 사회복지론, 사회사업론, 사회심리학, 사회정책, 사회조사방법, 사회학개론, 산업교육과정론, 산업교육론,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상담심리학, 성인·청소년지도, 성인심리학, 아동심리학, 여성학, 인력개발론, 조직이론, 지역사회개발론,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직업교육방법, 직업기술교육, 직업윤리, 청년심리학, 평생교육론
선택과목	
경영학개론 기업교육론 노인교육개론 산업복지론 여성교육개론 장애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과 윤리 청소년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과목2는 구법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

(구) 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행 학습과목

입학연도 및 이수한 과목에 따라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을 일부라도 이수하였다면 (구)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p>(구)평생교육 관련과목</p> <p>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p>	<p>필수과목</p>	<p>(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p> <p>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원격교육론 인간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p>
<p>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p>	<p>선택과목</p>	<p>노인교육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p>

학점은행 개설 예정과목 확인 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 표준교육과정 - 개설 예정과목 - 검색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조회 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 조회 - 검색

(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실습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p>실습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평생교육법 대상자는 별도의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실습 형태로 실습기관에서 3주, 120시간 이상 평생교육 실습을 실시
<p>실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p>실습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 진행 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실습 종료 시 실습기관에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를 발급받아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
<p>실습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3개월 이상인 구법 적용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 추후 평생교육업무경력 확인서 등 실습면제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필요서류 제출이 안내될 수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평생교육법 과목이수 시 유의사항

과목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도 자격증 신청 시 **각 2학점으로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cb.or.kr)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은 혼용하여 적용되지 않으니, 관련과목 이수 시 각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인정가능한 (구)평생교육 관련 과목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인 '교육사회학', '상담심리학' 등을 새롭게 이수하여도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2급		
 대학원	1호 대학원 재학생 필수5과목(총15학점) & 석/박사 학위 취득 ※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대학원 학위과정 내에서 필수5과목(총15학점) 취득필요	
 대학/학점은행기관	2호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30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3호 대학(원) 졸업생 /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30학점)
	3급	
 대학/학점은행기관	1호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21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2호 대학(원) 졸업생 /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21학점)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방법영역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선수과목 이수

- 대학/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이수(양성)기관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실습기관 선정, 평가 등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 수행

실습시간

-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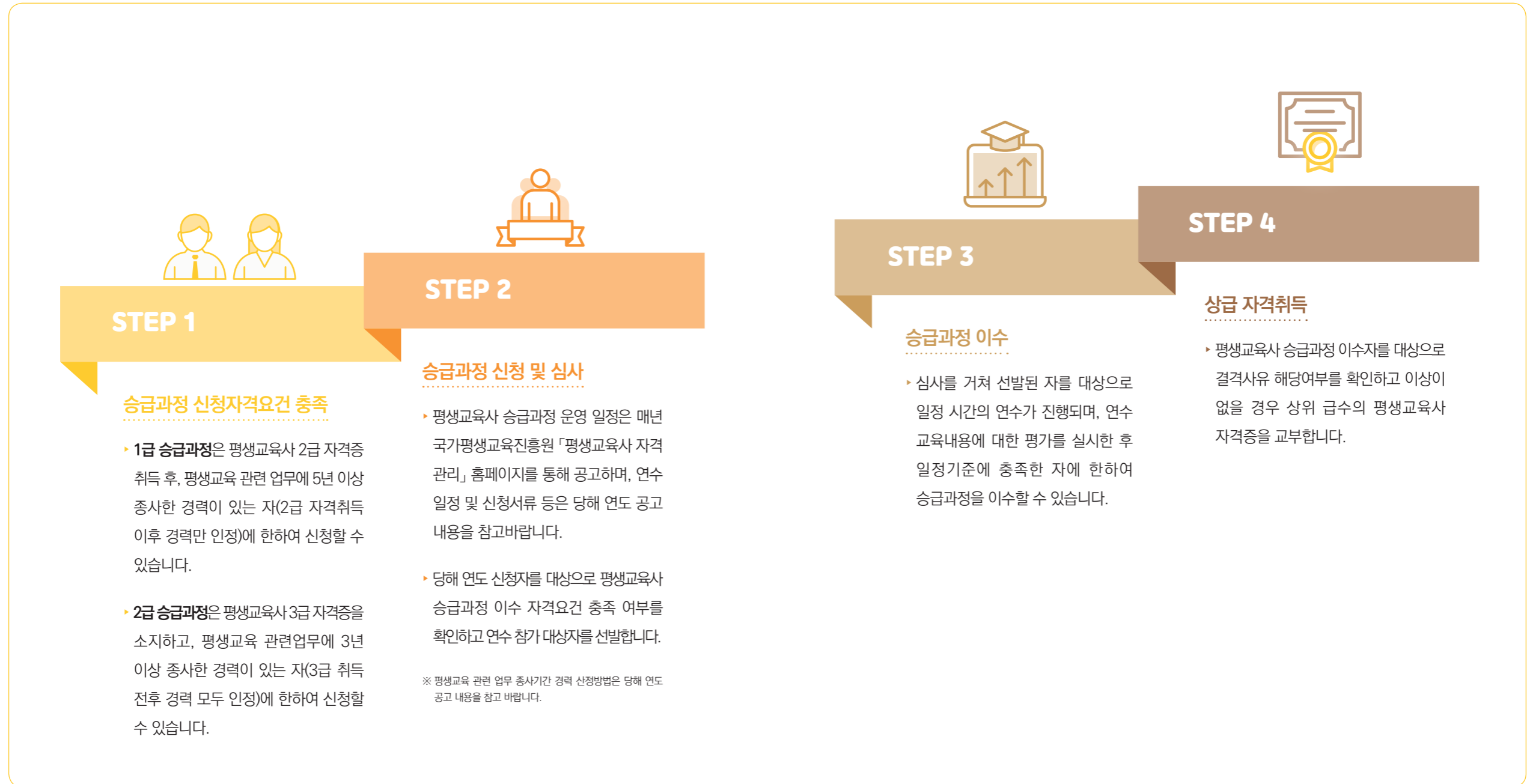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과목이수 시 유의사항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cb.or.kr)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4.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STEP 1

승급과정 신청자격요건 충족

- ▶ **1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급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2

승급과정 신청 및 심사

-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운영 일정은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 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연수 일정 및 신청서류 등은 당해 연도 공고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 당해 연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연수 참가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 업무 종사기간 경력 산정방법은 당해 연도 공고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STEP 3

승급과정 이수

- ▶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연수가 진행되며, 연수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승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STEP 4

상급 자격취득

-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상위 급수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III.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정

구분	접수 기간(연 4회)		자격증 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2월 둘째주 월요일 ~ 셋째주 금요일	3월 넷째주 금요일
제2차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5월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	6월 둘째주 금요일
제3차		7월 셋째주 월요일 ~ 넷째주 금요일	9월 둘째주 금요일
제4차		11월 첫째주 월요일 ~ 첫째주 금요일	11월 마지막날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접수는 불가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인정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 [부록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참조

구분	제출서류	참고
공통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인정불가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기본증명서(일반) 1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 제출 (상세유형도 제출 가능)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해당자별 추가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양성기관 보관용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 시간강사 및 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원본 확인하고 '원본대조필'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2. 평생교육사 재(전환)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재발급 신청방법

-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 

신청기간 및 교부기한

 - 신청기간** : 상시
 - 교부기한** :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통상 10일 이내 (단,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완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로그인(lledu.nile.or.kr) → 자격증 재(전환)발급 클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첨부**
 - (성명 정정 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초본 1부

사회교육전문요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 전환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
 - ※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 평생교육사 2급으로 전환 발급 가능
 -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 → 평생교육사 3급으로 전환 발급 가능
- 

신청기간 및 교부기한

 - 신청기간** : 상시
 - 교부기한** :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통상 10일 이내 (단,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완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로그인(lledu.nile.or.kr) → 자격증 재(전환)발급 클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첨부**
 - (성명 정정 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초본 1부

IV.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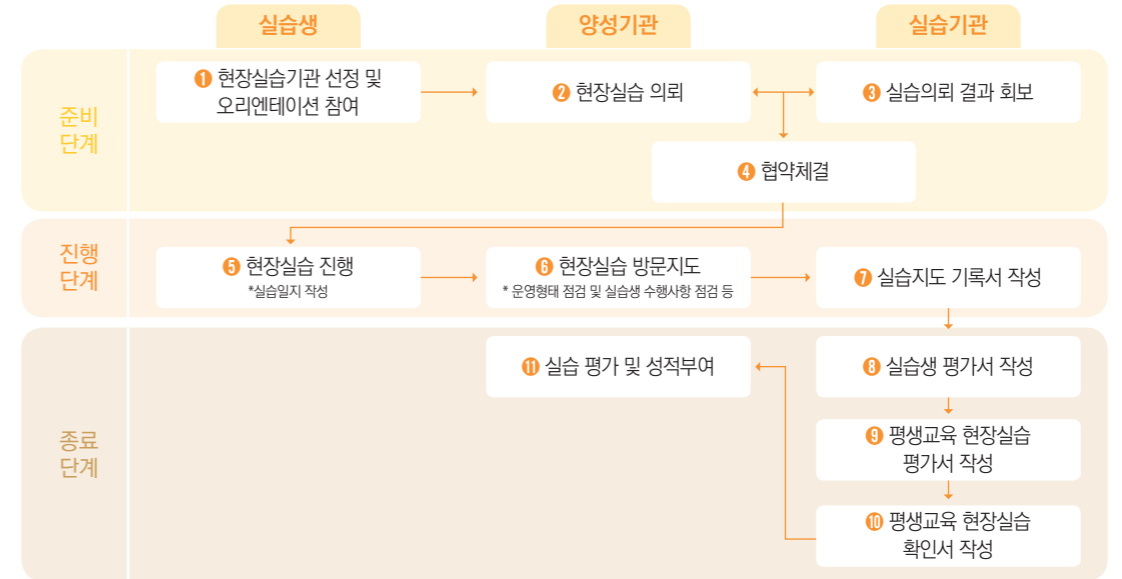
1.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기준

	구법	개정법
시간	3주 120시간	4주 160시간
내용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도 실습 가능	
기타	평생교육실습은 과목 형태로 이수하지 않고,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	평생교육실습은 과목 형태로 수강 신청 후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

2.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이수요건

교과목 이수요건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및 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상 ※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한다.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현장실습 이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절차 ▶ [부록 2]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관련 서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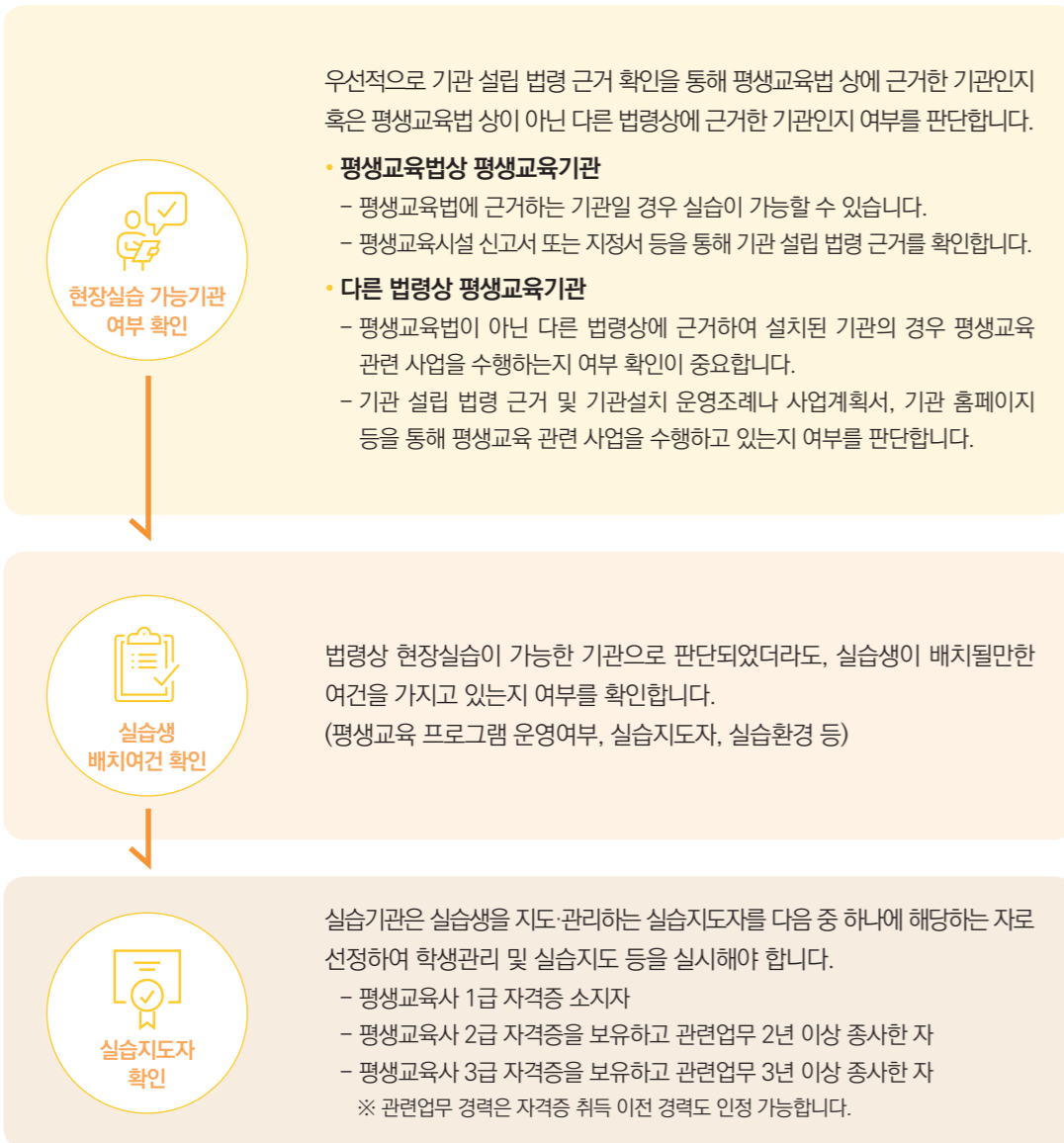
4. 평생교육사 실습담당교수·실습지도자 자격요건 및 주요역할

구분	자격요건	주요역할
실습담당교수 (양성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평생교육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p>* 평생교육 관련 학위 :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는 전공분야 예)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교육학** 전공</p> <p>** 단, '교육학' 관련 학위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반드시 소지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해당 경력(석사:3년, 박사:2년)이 있는 자이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기획과 평가 현장실습 세미나 실시 현장실습 모니터링 현장실습 평가 피드백 현장실습 평가회 실시 실습생 최종 평가·학점부여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희망자 사전 면담 실습허가 오리엔테이션 양성기관과 실습협약 현장실습 실시 및 관리 현장실습 평가서 작성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5.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유형 및 예시 ▶ [부록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및 평생교육기관 유형 참조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 판단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V.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상담

전화상담

- ARS 대표번호 : ☎ 1577-3867
- 상담시간 : 평일 월~금 / 13:00~17:00



온라인 상담

- 상담방법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 - 로그인 - 사이버상담실
- 상담시간 : 상시 이용 가능
- 답변기한 : 업무일(평일) 기준 5일 이내

VI. 자주하는 질문

“ [Q&A]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준비 관련 ”

Q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 평생교육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여야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위 미소지자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이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하려고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습자 등록 시 희망전공은 무엇으로 선택해야하나요?

A |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이 아닌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희망학위 과정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의 모든 전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희망전공은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점은행제 콜센터 상담) ☎1600-0400

Q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 • [구법] 적용대상자((구)평생교육 관련과목 운영적용)
- '09년 3월 이전 대학에 입학한 졸업(예정)생, 자퇴생, 제적생
※ 졸업생, 자퇴생, 제적생은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자이어야 함.
• [개정법] 적용대상자((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운영적용)
- '09년 3월 이후 신입생
- '09년 3월 이전 대학에 입학한 졸업생, 자퇴생, 제적생이 재학 당시 관련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전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을 경우 학점은행제상 학위취득이 아닌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희망학위과정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의 모든 전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Q | 대학 재학 중 이수한 평생교육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 학점등록을 해야하나요?

A | 대학 재학 중 졸업학점에 포함된 과목의 학점은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대학 측에서 해당 과목이 명시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되며, 학점은행제에 학점등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Q | 평생교육 관련과목은 어디에서 이수할 수 있나요?

A |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Q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석사 혹은 박사 수료 상태에서 필수 5과목 이수	불가 (석사 혹은 박사 학위취득 필요하며 해당학위과정 내에서 필수5과목이 이수되어야 함)
석사 혹은 박사 학위과정 내에서 필수과목 4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불가 (석사 혹은 박사 학위과정 내에서 필수5과목 모두 이수되어야 함. 해당 경우는 10과목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함)

Q | 전문대학(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 • (구)평생교육법에서는 전문대학(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평생교육 관련과목 30학점(15과목) 이상 이수 시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습니다(4년제 대학 : 평생교육 관련과목 20학점 이상 취득 시 자격증 취득 가능).
•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동일하게, '08년 2월 15일 이후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기 시작하여 30학점(10과목)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 [Q&A] 평생교육실습 관련 ” ”

Q | 평생교육실습은 언제든 이수 가능한가요?

A | 평생교육 실습과목 운영지침에 의거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 시 필수 4과목이 선이수 되어야하며, 대학원에서 이수 시 필수 3과목이 선이수되어야합니다.

Q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실습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

	(구)평생교육법	(개정)평생교육법
과목이수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X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O
이수시간	3주, 120시간	4주, 16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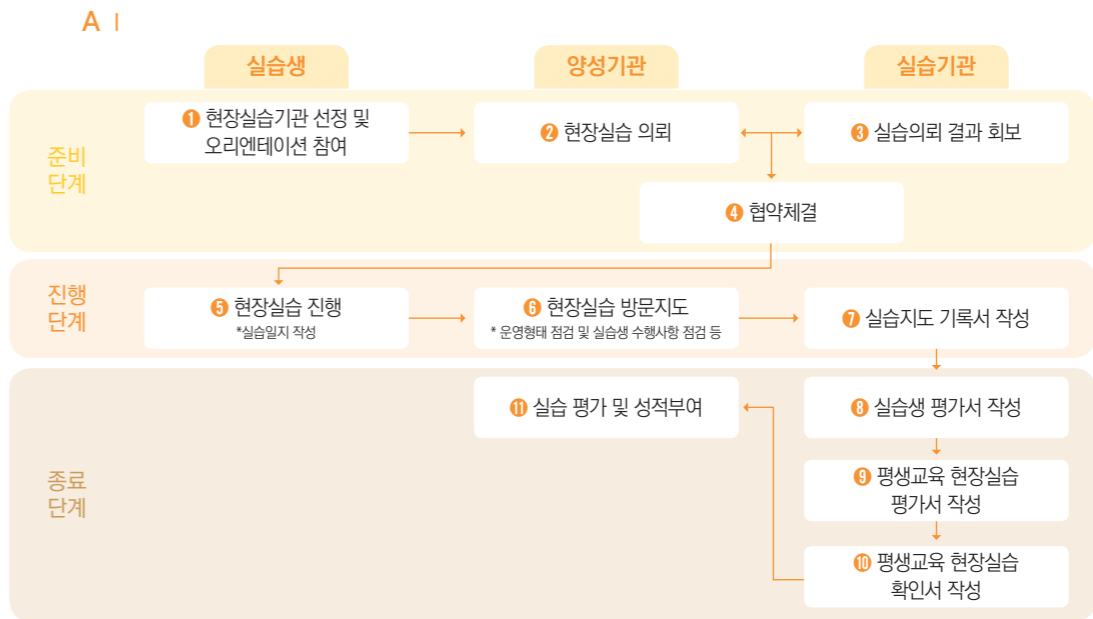
Q | 평생교육기관에서 현장경력이 있는 경우 평생교육실습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 • [구법] 적용자의 경우에 한해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현장실습을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이때 경력자란 해당 기관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를 의미하고, 경력자는 평생교육 업무 직접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장의 확인서(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lledu.nile.or.kr)]의 [자료실]에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제출

Q | 반드시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한가요?

A | •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Q | (개정)평생교육법 대상자의 평생교육실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A]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관련 ”

Q |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은 분기별 1회로 연 4회 시행이 되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lledu.nile.or.kr)에 공고가 됩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습자 개인신청이 가능한가요?

A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인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자격증 신청서류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Q | 대학 재학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주체는 어디인가요?

A |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모든 기관에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① 평생교육론 ② 평생교육방법론 ③ 평생교육경영론 ④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Q | 이수과목당 성적이 80점 이상 되어야 하나요?

A | 이수과목당 80점이 아닌,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과목의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발급된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기관으로 교부(우편발송)되며, 각 양성기관에서는 자격증 검토 및 개별 신청자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합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예정)확인서 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A | 기 자격취득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상시 출력가능하며, 자격취득 예정자는 자격증 신청 이후 서류검정단계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격검정 이후 검정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Q |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 자격증 발급 신청에 앞서 우선적으로 학점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 학점은행기관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해서 학점취득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며, 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 반드시 학점은행제상 학점이 등록되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취득 과목의 학점등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 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수한 학점은행기관으로 제출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적인 개인신청은 불가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매년 1, 4, 7, 10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 평생교육사 3급 취득자가 2급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A |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 연수를 통해 2급 자격증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 연 1회 운영, 단 모집 최소인원 기준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

부록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2. 평생교육 현장실습 관련 서식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및 평생교육기관 유형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21. 12. 9.>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성명(한글)	한글명 기입 (ex. 이평생)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입 (ex. 900101-1234567)		전화번호 본인 연락처 기입 (ex. 010-0000-0000)
	주소 (ex.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발급신청을 담당할 양성기관으로 일괄배송 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수령해야 함.		
	최종학력	학교명 최종 졸업한 대학교명 기입 (제출서류와 동일)	전공 전공학과 기입(ex. 평생교육학과)	
	기간	최종 졸업한 대학교 입학일자와 졸업일자 기입 (ex. 입학 2015.03.01. ~ 졸업 2019.02.25.)		학위등록번호 취득한 학위번호 기재 (ex. OO 대학교 2002(학)0000)
	이수기관	기관명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기관 기입 (ex. OO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수기간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기간 (개강일~종강일) (ex. 2000.03.01.~2002.6.31)	

신청 내용	자격등급	평생교육사 급 자격요건에 맞는 등급 기입 (ex. 2급)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급 제 호 자격요건에 맞는 등급 및 호수 기입 (ex. 2급 제 2 호)
	이수과목 및 경력	뒤쪽과 같음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날짜 반드시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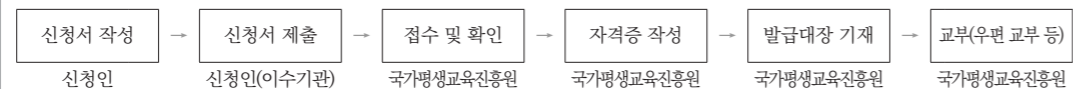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명 기입 후 자필서명 혹은 도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6.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이수과목 및 경력				
이수기관명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기관명 기입(복수 기재 가능)			
이수과목				
구분	과목	이수기관명	학점	성적
필수 과목	평생교육개론	000 대학교	3	95
	평생교육경영학	000 대학교	3	85
	평생교육방법론	000 대학교	3	90
	평생교육실습	000 대학교	3	9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000 대학교	3	100
소 계			15	
선택 과목	여성교육개론	000 대학교	3	100
	성인학습및상담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88
	교수설계	000 대학교	3	85
	인적자원개발론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98
	직업·진로설계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97
소 계			15	
합계			30	92.9

경력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으로 평생교육실습 면제자만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기입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비고
xxx 평생교육원	~팀	2021.1.1.~2022.1.1	12개월	
		~		
		~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시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 or 등급별 기준이 미기재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중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확인을 위해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를 구비하여 제출함.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각 대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하시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성적증명서에 과목별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성(제출)하지 않습니다.

성 명 :
 학교명 :

백분위 환산 점수 사용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4.5			3.3			2.1			0.9	
	4.4			3.2			2.0			0.8	
	4.3			3.1			1.9			0.7	
	4.2			3.0			1.8			0.6	
	4.1			2.9			1.7			0.5	
	4.0			2.8			1.6			0.4	
	3.9			2.7			1.5			0.3	
	3.8			2.6			1.4			0.2	
	3.7			2.5			1.3			0.1	
	3.6			2.4			1.2			0.0	
	3.5			2.3			1.1				
	3.4			2.2			1.0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산출시 부여한 원점수 사용

위 대상자가 본교(기관)에서 이수한 과목과 취득 성적(점수)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학과(부서)장 (인)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5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5	99	B+	3.3	87	C0	2.1	75	D0	0.9	63
A+	4.4	98	B+	3.2	86	C0	2.0	74	D-	0.8	62
A+	4.3	97	B0	3.1	85	C0	1.9	73	D-	0.7	61
A0	4.2	96	B0	3.0	84	C-	1.8	72	D-	0.6	60
A0	4.1	95	B0	2.9	83	C-	1.7	71	D-	0.5	59
A0	4.0	94	B-	2.8	82	C-	1.6	70	D-	0.4	58
A0	3.9	93	B-	2.7	81	C-	1.5	69	D-	0.3	57
A-	3.8	92	B-	2.6	80	D+	1.4	68	D-	0.2	56
A-	3.7	91	B-	2.5	79	D+	1.3	67	D-	0.1	55
A-	3.6	90	C+	2.4	78	D+	1.2	66	F	0.0	54
A-	3.5	89	C+	2.3	77	D0	1.1	65			
B+	3.4	88	C+	2.2	76	D0	1.0	64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3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99	B+	3.2	88	C+	2.1	77	D0	1.0	66
A+	4.2	98	B+	3.1	87	C0	2.0	76	D0	0.9	65
A+	4.1	97	B0	3.0	86	C0	1.9	75	D0	0.8	64
A0	4.0	96	B0	2.9	85	C0	1.8	74	D-	0.7	63
A0	3.9	95	B0	2.8	84	C-	1.7	73	D-	0.6	62
A0	3.8	94	B-	2.7	83	C-	1.6	72	D-	0.5	61
A-	3.7	93	B-	2.6	82	C-	1.5	71	D-	0.4	60
A-	3.6	92	B-	2.5	81	C-	1.4	70	D-	0.3	59
A-	3.5	91	B-	2.4	80	D+	1.3	69	D-	0.2	58
A-	3.4	90	C+	2.3	79	D+	1.2	68	D-	0.1	57
B+	3.3	89	C+	2.2	78	D+	1.1	67	F	0.0	56

(개정 평생교육법 적용자) 필수과목으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평생교육 시설 또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하에 4주, 160시간 이상 실시

((구)평생교육법 적용자) 평생교육실습 별도 과목 이수 없이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시설 또는 평생교육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하에 3주, 120시간 이상 실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1. 실습기관명 : OO 평생학습센터
- 2. 실습기간 : 2022년 7월 9일 ~ 2022년 8월 3일(4주, 총 160시간)
- 3. 실습지도자 :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평생학습과 OOO 주무관	OOO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업무 담당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교실 운영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 관련 경력 (4년)

4. 실습내용 :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 기관 및 실습내용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공문서 작성 실습 - OO 프로그램 모의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5. 실습상황

실습생 성명	학과명	근무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력 (50%)	연구조사 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 (10%)	총평 (100%)	비고
OOO	평생교육학과	10	13	45	14	9	91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8월 5일

OO 평생학습센터장 OOO

직인

(학습자가 이수한 교과목 명칭이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를 구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최종 확정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 학교명 : (ex. OO 대학교)
- 과목 운영 학과(학부)명 : (ex. 평생교육학과)
- 유사교과목 확인내역

구분	법정 교과목명	인정 유사교과목명	과목 개설일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필수과목 필수과목	(예시) 평생교육개론	(예시) 평생교육의 이해	2001년 2학기	교육과정 동일
선택과목 선택과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법정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0000대학교 총장
(또는 학과(부서)장)

※ [별첨] 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

(구) 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 중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3개월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는 현장실습 면제가 가능함
 ※ (필수 제출 서류)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1부

평생교육업무경력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0 0 0	생년월일	1980. 12. 06
2. 기관사항 (붙임. 평생교육기관 유형 참조)			
기 관 명	000 평생학습관	기관유형	1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군 <input type="checkbox"/>
3. 경력사항 (붙임.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조)			
소속부서명	(ex. 평생학습과)	근무기간	(ex. 2022.01.01.~2022.12.31.)
고용형태	(ex. 통상근로자)	주당 근무시간	(ex. 주당 40시간)
담당업무	※ 대표적인 평생교육 관련 담당업무 1개 이상 기술		

위 기간 동안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OO 평생학습센터장 O O O

직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2. 평생교육 현장실습 관련 서식

[양식 1] 현장실습 협약서

현장실습 협약서(예시)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대학교(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소속 학생들(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현장실습 운영기준)

- ①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 20일(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운영하되,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갑”의 현장실습 운영)

- ① “갑”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현장실습 내용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 ②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희망 진출분야 및 진로를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갑”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 (“을”의 현장실습 운영)

- ① “을”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갑”과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신청서를 접수,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 ③ “을”은 “갑”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 및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 ④ “을”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갑”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양식 3】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

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				
실습기관명			방문일자	
실습지도자	직위		성명	
실습생	성명	학번	학년	전공/학과
방문지도 내용				
협의사항				
현장조사 실패의견	※ 실습기관 환경, 실습내용의 적합성, 실습학생 업무처리 사항, 학생 면담 결과, 기타내용 등을 포함하여 서술			
위와 같이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업무협의 및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직위 : 성명 : (서명)				

【양식 4】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생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교/학과명		실습지도교수명	
	실습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총 일)		
	실습시간	총 시간 (매주 요일부터 ~ 요일까지)		
실습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전화번호		실습운영부서	
	주소			
실습기관 정보	실습지도자	성명		급수
		생년월일		취득기관명
		직위직위		취득일
				자격번호
	실습지도자 평생교육 관련 경력			
	기관명	소속부서	기간(년월)	담당 업무
			년 월~ 년 월(총 개월)	
			년 월~ 년 월(총 개월)	
총 경력개월		총 개월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양식 5】실습일지

실습일지(0일차)

실습일	년 월 일(요일)			실습지도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출근일시	퇴근시간	식사시간	
실습시간				시간
실습내용	※ 실습일정에 따른 업무명 순으로, 주요 활동내용을 기술 ※ 실습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술(실습일지는 개인일기가 아니므로, 실습일과에 대한 개인의 감정, 의견, 느낌 등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함) ※ 프로그램 참관(보조진행) 시, 단순히 '000프로그램 참관'이 아닌, 프로그램의 목적, 주요내용, 강의자의 진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			
실습소감 및 자기평가 (협의사항 포함)	※ 실습내용에 관한 실습생의 의견 및 자기평가를 기술하되 사실에 기초하여 기록하며 발전·진행적으로 기록 ※ 실습지도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등을 기록 ※ 해당 일자의 실습업무 수행을 통해 실습지도자에게 제안하고 싶은 사항 기록			

【양식 6】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1. 실습의뢰 결과
 수락합니다(수락시 하단의 내용 기재) 거절합니다

2. 실습 기본사항

① 실습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유형	
전화번호		실습운영부서	
주소			

② 실습지도자 정보

성명		평생교육사 자격소지	급수	
생년월일			취득기관명	
직위			취득일	
			자격번호	

평생교육 관련 경력

기관명	소속부서	경력기간(년월)	담당업무
		년 월~ 년 월(총 개월)	
		년 월~ 년 월(총 개월)	
총 경력개월		총 개월	

③ 요청사항

필요서류	
실습비	원(실습개시일 납부 요망)
참고사항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서 의뢰한 현장실습 의뢰 결과를 회보합니다.

실습기관의 장 직인

※ [붙임]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1부.

【양식 7】실습지도기록서

실습지도기록서

실습지도자 : (서명 또는 인)

주차	실습지도자 의견
1주차	※ 실습생의 강점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 제시 ※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을 주차별 작성
2주차	
3주차	
4주차	

※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 중 40시간을 1주로 산정하여 작성

【양식 8】실습생 평가서

실습생 평가서

실습생명		생년월일	
양성기관명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평가영역(배점)	평가항목		배점	점수
근무태도(10)	근무사항	•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	5	
	태도	• 성실성, 근면성, 친절성, 적극성, 예절 등	5	
자질(15)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 실습목표 설정 • 실습세부계획 수립 등	5	
	가치관	• 평생교육에 대한 가치관 및 신념 • 실습생으로서의 자세와 역할 등	5	
	관계형성	• 기관 내 직원들과의 협조적인 대인관계 • 동료실습생과의 관계 • 평생학습 네트워크체제 이해 등	5	
학습지도(50)	필수 항목	기관이해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의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이해 • 실습기관의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이해 •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10
		모의 프로그램 개발(I)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15
		모의 프로그램 개발(II)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5
	선택 항목 (택 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	•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 •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20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행사 참석	•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 • 평생학습 관련 행사(지역축제, 박람회 등)	
연구조사 활동(15)	필수 항목	모의 프로그램 개발(I)	•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 학습자 요구분석(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10)	필수 항목	행정업무	• 기안 및 공문서의 모의작성 여부 • 사업예산(안) 편성	10
총 점			100	

※ 「평생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실습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고,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에 평가점수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항목 부분은 실습내용으로 택 1하여 실시한 항목만을 기재하고 평가하도록 합니다.

○ 1군 평생교육기관 유형

구분	기관유형	설립 근거	기관소개	예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1 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평생학습관, 공동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등	지정여부 확인	시·도교육청 지정
제 2 유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기관	-	설치·지정여부 확인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설치·지정
제 3 유형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음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11년 지정 시작)	-	시·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제15조	• 지역내 평생학습 주체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구축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된 학습도시	시·군·구 평생교육 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지정여부 확인	-
제 4 유형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진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지정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심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	-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 시·도 내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여부 확인	각 시·도에 등록
제 5 유형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법 제14조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둔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여부 확인	각 시·군·구 설치
		평생교육법 제29조	•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	-
제 6 유형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법 제29조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사업운영 지정기간에 한함)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지정 대학 (사업운영 지정기간에 한함)	지정여부 확인	교육부 지정

구분	기관유형	설립 근거	기관소개	예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30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범학교)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초·중등학교에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함.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지정여부 확인	시·도교육청 지정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산업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보고사항 확인	교육부에 보고
제 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 인정	• 정규 학교 교육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등록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지정
		학력 미인정	• 일정기준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 등록가능	-	등록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등록
제 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기관	상정공업고등학교, 삼정진자공과대학교, ST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사내대학, LH 토지주택대학교, KDB 금융대학교 등의 사내대학	인가여부 확인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및 사이버 교육원 등	신고여부 확인
제 3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인가여부 확인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법 제34조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병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제 34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 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기관	신문사·방송사 문화센터(아카데미)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제 35조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기관	기업체연수원(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기관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 2군 평생교육기관 유형

구분	기관유형	설립근거	기관소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9유형 (출연 및 연수형)	평생직업교육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교교과교육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기관의 설립·운영등록증 등으로 기관소재 지역교육청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등록/ 학교교과교육 학원의제외
	주민자치기관	지방자치법령	•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로서, 교육·체육·문화 예술의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 • 시·군·자치회관, 주민센터 등		-
		도서관법	•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류·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
	문화시설기관	지방문화원 진흥법	•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수행비용 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을 포함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해당 법령에 근거한 기관 설치 확인 및 운영조례 등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시·군·구에 신고
	여성 관련 시설	여성평등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시·군·구에 설치 또는 시도 지정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육성지원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	• 노인교실 등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유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정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회)관		시·군·구에 신고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 설치 또는 시·군·구에 신고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 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을 두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 또는 시도 및 시·군· 구 설치·지정	
사회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구분	기관유형	설립근거	기관소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9유형 (출연 및 연수형)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 공직직업훈련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여부를 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여부를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협의·승인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연수기관	공무원교육 훈련법	• 공무원연수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감사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국제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건설교통인력개발원, 통계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철도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전자정부지원센터 정보교육과, 외교인양연수원, 교수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 법무청 교육담당관실,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수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기상청 기상교육과,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국회사무처 연수국,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관리국 등)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수기관 여부를 확인	-	
		각 법령		평생교육법이 아닌 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체, 금융투자업 등의 일반 연수기관(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평생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근거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 확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위주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 평생교육실천협의회,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각 시·도에 등록	
	비영리 사(재)단법인	사(재)단법인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재)단법인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기본법/ 사(재)단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	
	여성 관련 단체	여성발전기본법/ 사(재)단법인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 등의 내용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노인 관련 단체	노인복지법/ 사(재)단법인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	
	시민단체	시민단체	•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체 •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제 11유형	기 타	• 기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타 법령상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PM2022-67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 강대중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화 : 02-3780-9700

홈페이지 : <https://www.nile.or.kr>

인쇄처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허락 없이 본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